

의안번호	2219110
의 퇴 인	김위상 의원
회 답 일	2026.7.24.
추 계 번호	26B276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0조의2 (인공지능 산업재해 예방시스템 구축·운영 지원) 신설	사업주는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위험 요인 관리와 잠재적 원인 예방을 위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산업재해 예방시스템(이하 “인공지능 산업재해 예방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제1항)	재량규정
		정부는 인공지능 산업재해 예방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기술지원,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제2항)	재량규정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공지능 산업재해 예방시스템 구축·운영 지원의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항)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40조의2(인공지능 산업재해 예방시스템 구축·운영 지원) 신설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본문참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위험 요인 관리와 잠재적 원인 예방을 위하여 인공지능 산업재해 예방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재해 예방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기술지원,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임

-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산업 재해 예방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주의 수’와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구축될 시스템의 구체적인 기능과 이로 인한 재정 소요 규모를 검토하여야 하나, 현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인공지능 산업재해 예방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사업대상자의 규모와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또한, 개정안은 인공지능 산업재해 예방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 기준과 절차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지원 내용·대상 및 규모 등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화 되지 않아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 － 참고로, 2026년 현재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¹⁾ 동 사업의 일환으로 산업재해 예방 채널인 ‘산업안전포털’을 구축 운영하고 있음

Ⅲ. 부대의견

□ 없음

1) 안전보건관리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사업(코드: 4155-351)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go.kr

참고 1 안전보건관리정보시스템 운영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제9조(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사업대상) 고용부, 공단, 산재예방기관, 사업장 등
 (사업성격) 사업수행을 위한 IT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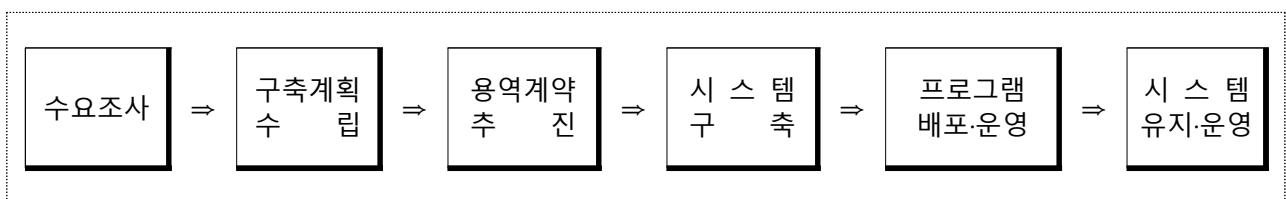
□ 사업개요

- 산재예방사업 수행을 위한 전산시스템 유지·운영, 산업안전포털 구축, 민간 재해예방기관 정보연계 및 대국민 정보서비스 제공으로 사업 수행 지원

□ 사업내용

- (산업안전포털 구축) 대외 시스템을 통합하여 안전보건 정보 취득, 민원 신청, 맞춤형 정보 제공 등을 한 곳에서 처리
- (산재예방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공단, 고용노동부, 산재예방 관련 민간기관 등과 사업장 관련 정보 통합·공유 시스템 및 대국민 홈페이지 고도화
- (내부 시스템 운영) 그룹웨어 개선, 정보시스템 유지운영, 정보화 사무환경개선, 정보화 교육 및 감리 등을 통한 정보화 역량 강화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 정보시스템 모니터링 및 망분리로 보안 강화, 교육·진단·감사 등으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수준 향상

□ 사업절차



□ 예산 및 물량 현황

구 분	'24년	'25년	'26년
예 산	18,033백만원	14,636백만원	9,441백만원
물 량	12식	12식	12식

참고 1-1

산업안전포털 구축

(자료: 고용노동부)

□ 사업개요

- 「산업안전포털」 구축을 통한 대국민 산재예방 채널 단일화로, 안전보건정보 취득과 지원사업 신청을 하나의 사이트 접속으로 원스톱 처리
 - 기존 분산된 공단 대외시스템을 하나의 포털로 통합·구현

*** ('23년) ISP 수행 → ('24년~'25년) 포털 구축시범운영 → ('26년)포털 본격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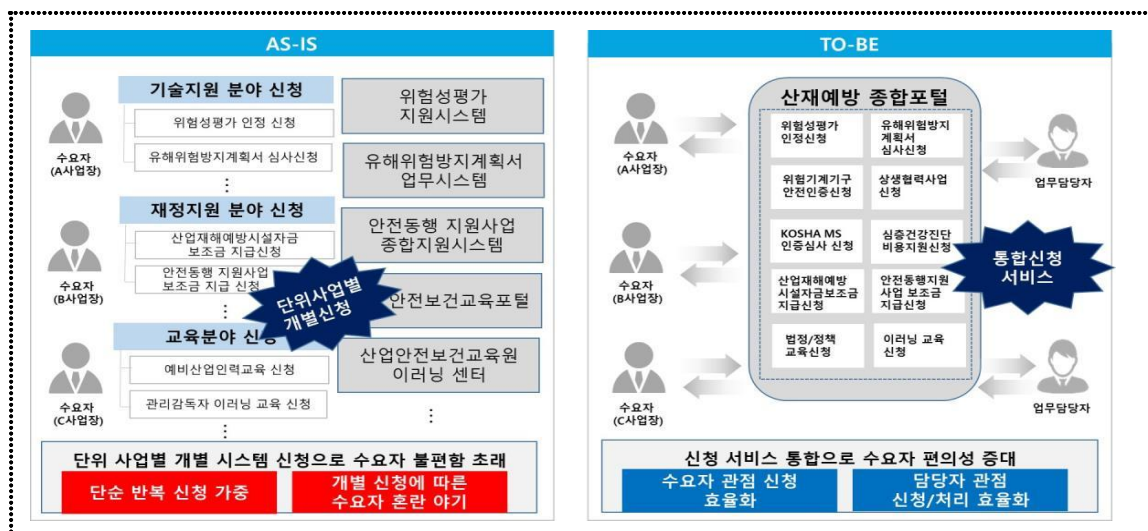
- 포털 내 **My page** 정보를 확장·연결하여 자율안전보건정착 뒷받침
 - 시스템별 분산 제공되던 정보를 융합·특화하여 포털 내에서 스스로 정보를 취득하여 위험 예측, 맞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구현

□ 필요성

- (산재예방 서비스 “국민 편익” 제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국민의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문의를 증가하고 있으나 정보 확인·민원 신청 한계
 - 안전보건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은 산안법 준수를 위한 정보 확보가 어렵고, 개별 시스템 접속으로 불편 가중
- (서비스 운영) '24~'25년 포털 구축 후 '26년 본격 운영 필요

□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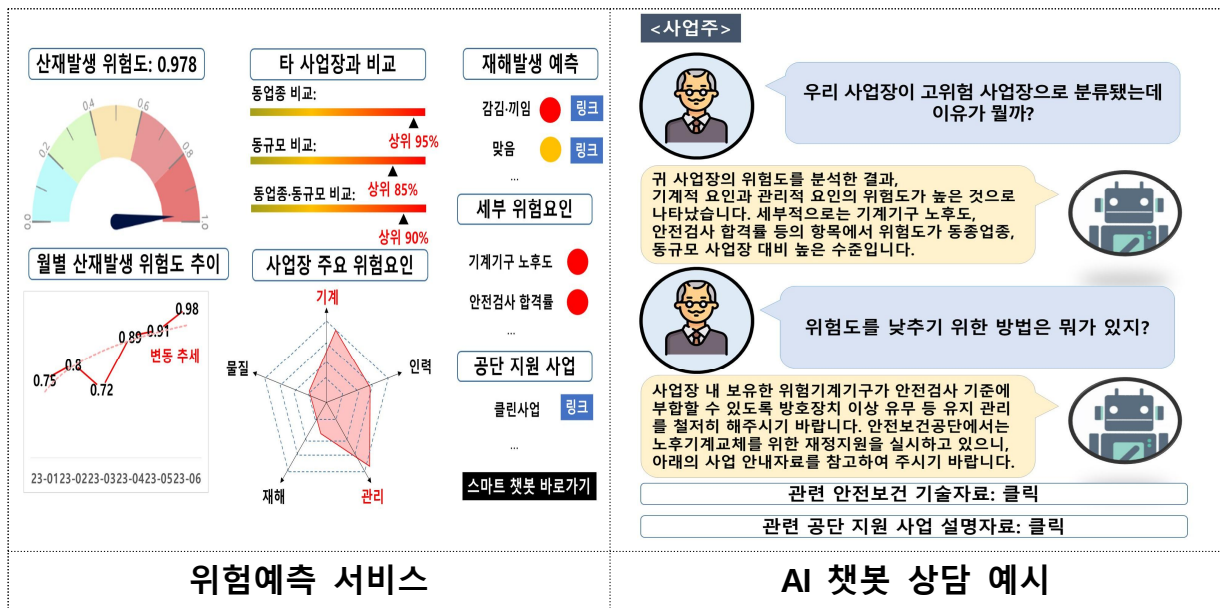
- (모든 서비스를 “한곳에서”) 시스템 별 상이한 로그인 방식(12종)을 단일화하고, 민원 신청과 신청현황조회, 자료검색이 원스톱으로 한번에 가능토록 구현



- (필요한 서비스를 “알아서”) 회원정보, 사업수행이력 등을 통합한 **My Page**를 기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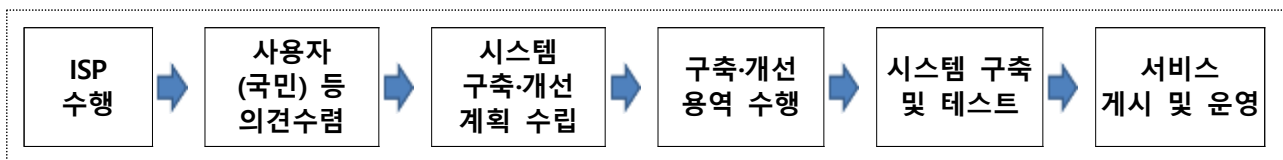
으로 사업장/근로자에게 필요한 안전보건 서비스를 알아서 제공

- (맞춤추천) 사업장 업종, 규모, 보유 위험기계 등의 정보에 따라 각종 재정 지원, 컨설팅 사업을 추천하고 가이드 법령정보 등 연계
 - ※ 근로자에게는 법정교육추천, 건강진단 결과 예방대책 및 상담기관 안내 등
- (위험예측) 빅데이터 예측 모델을 활용, 동규모·동업종 사업장과 비교한 사업장 위험도를 시각화하고 주요 위험요인 제시(AI 챗봇 상담 병행)
- (확인·알림) 놓치기 쉬운 검사 실시주기, 교육일정 등을 SNS 알림 송출



- (데이터 통합으로 “스마트하게”) 분산되어 있던 사업장별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정책효과 분석 및 설계를 위한 기초 데이터로 활용
 - 고품질의 안전보건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 기반 마련

□ 사업절차



□ 예산 및 물량 현황

구 분	'24년	'25년	'26년
예 산	12,393백만원	8,165백만원	2,726백만원
물 량	1식	1식	1식